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수석전문위원 신복순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24년 11월 15일
- 회부일자 : 2024년 11월 15일

3. 제안이유

- 행정수요 변화 등에 따른 민선 8기 주요 현안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도정 성과창출의 가속화를 위한 기구 및 분장사무 조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기구 조정
 - “기획관리실”을 “기획조정실”로 행정기구 명칭 변경(안 제5조 등)
 - “농업기술원”에 분원을 두는 사항과 관련된 조항 신설(안 제24조의2)
- 분장사무 조정
 - 문화체육관광국 : 정원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등 신설(안 제10조)
 - 소방본부 : 사무명칭 변경(119특수구조단 → 119특수대응단)(안 제14조)
 - 청남대관리사업소 : 교육 및 체험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49조)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기획관리실과 농업기술원의 기구를 조정하고, 문화체육관광국·소방본부·청남대관리사업소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개정을 하려는 것임.
- 안 제5조 및 제6조는 기존 “기획관리실”의 행정기구 명칭을 “기획조정실”로 변경하려는 것으로,
 - 도정 전반에 대한 기획과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이고, 전국 16개 시도에서 동일한 기능을 하는 행정기구의 명칭을 “기획조정실”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이견 없음.
- 안 제10조는 문화체육관광국의 분장사무에 정원문화 확산, 정원산업 생태계 육성 및 정원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,
 - 2015년 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국가정원의 개념의 등장을 계기로 수목원·정원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,
 - 특히 우리 도는 “자연정원 충복”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는 바, 이를 위한 전담부서의 설치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이견 없음.
- 안 제14조는 기존 “특수구조단”의 명칭을 “특수대응단”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,
 - 「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」이 2021년 일부개정을 통해 119 특수대응단의 설치·폐지·통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과 함께, 119특수대응단장 및 하부조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, 이를 우리 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 없음.

- 안 제24조의2는 농업기술원 분원의 설치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,
 - 2025년 2월 준공 예정인 충북 영동군 소재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분원은 충북 남부권 균형발전 및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해 설치되었고(2025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참조),
 - 스마트기술팀, 건전묘개발팀과 포도연구소, 대추연구소, 와인연구소가 이전하여 설치 목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, 특별한 이견 없음.

- 안 제49조는 청남대관리사업소의 소관사무에 교육 및 체험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,
 - 나라사랑교육문화원이 2024년 9월 준공됨에 따라 교육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전담부서의 설치가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, 특별한 이견 없음.